

第114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面
- 2.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6面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001. 9. 4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8월 23일 · 오필근 의원 외 3인
- 나. 회부일자 : 2001년 8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11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2001. 8. 31) 운영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오 필 근 의원)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날로 대폭 증대되고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전문분야별로 의안을 분담하여 예비심사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임기가 1년으로 짧게 규정되어 있어 의원들이 소속 위원회의 적응기간을 거쳐 전문성을 띠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때쯤이면 임기가 도래하여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활동을 계속성 있게 보장해 주기 위하여 상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확대하고 위원정수에 관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에 있어 궐원(闕員) 발생에 따른 단서조항 신설 (안 제2조)
-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안 제5조제1항)

다.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54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개정 이유

- 우리 구의회에 두는 3개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9인으로 규정하고, 달리 단서규정을 두지 않아서 의원의 궐원이 생길 경우 위원회 정수가 즉시 조레 불일치 사례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과 상임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개 요 >

- 제2조 단서규정 신설
- 제5조 임기연장
- 부칙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

< 내 용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9인 2. 시민행정위원회 9인 3. 재무건설위원회 9인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정수에 있어 원구성 후 궐원이 발생한 위원회는 보궐선거로 충원이 있기까지는 궐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5조는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 위원회 관련법규

< 위원회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50조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로 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구 분	상임위원수
의원정수 41인이상	5개 이내
의원정수 31인이상 40人以下	4개 이내
의원정수 13인이상 30人以下	3개 이내

※용어의 정의 - 의회대사전

결원(缺員) : 정원에서 사람이 빠져 모자람

궐원(闕員) :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같이 회의체의 구성원이 사망, 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라. 개정(안)별 심사

< 제2조 > 위원회 정수에 단서규정 설치안

○개정방법별 검토

안	개정방법별	심사사항
1안	8인으로 개정	가장 정확한 개정이 되나 궐원 보충이 될 경우 즉시 개정을 해야 하므로 조례의 안정성을 해침
2안	9인 "이하"로 개정	이하 표현은 정수개념이 아닌 점과 중복 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경우는 실제 9인 이하로 악용할 소지도 있음
3안	단서규정 설치안	탄력적인 안으로 가장 타당함

< 제5조 > 상임위원회 임기연장안

○현행 임기(1년)로 인한 장단점

장 점	단 점
위원장 담임 기회 증가 구정을 광범위하게 인지 의장 영향력 증대	위원회 전문성 결여 타 시·구의회와의 이질감 잦은 선거에 따른 후유증

마. 검토의견

- 상임위원회 임기(안)은 1991년도에 행자부에서 시달된 상임위원회 구성준칙(안)에는 임기 2년으로 되어 있으나
- 우리 구와 용산 등 몇 개 구는 구정 체험기획의 균등 배분 등의 취지로 1년으로 한 바 있으나 8월 23일 현재 타구를 조사해본 결과 상임위가 없는 금천구를 제외한 23개 구 모두가 2년 임기로 하고 있어 2년 임기로 수정하는 안이 보편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 위원회별 정수 규정은 단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천 상 욱 위원, 이 동 규 위원, 이 현 구 위원, 안 재 흥 위원, 정 병 환 위원, 박 종 식 위원, 선 상 선 위원)

(답변자 : 오 필 근 의원, 장 소 수 전문위원)

문) (안) 제2조 위원정수에 관하여 단서규정을 두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5조제1항의 상임위원장 및 위원 임기에 관한 개정안은 우리 의원들이 해당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나온 것인 만큼 4년의 임기동안 골고루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파, 또한 좀더 많은 의원들이 위원장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임기를 1년으로 한 것인데, '91년부터 현재까지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잦은 선거로 인한 의원들간의 반목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로 인한 후유증도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91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준칙안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없는 금천구를 빼고는 23개 모든 구가 임기를 2년으로 제정하였고, 또한 그 상태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구는 모두 2년이고 우리 구는 1년이라 각 구의회 상임위원장 회의 때 이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문) (안) 부칙을 보면, 제5조제1항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은 당리당락 차원이 아닙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부칙에서의 이러한 단서규정은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법률상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문) 여차피 (안) 제5조제1항의 시행일이 내년 제4대 의회 때부터라면 우리가 바꿀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선된 분들이 개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답)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차후에 가면 이 사항은 절대 개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종료 시점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개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討 論 要 旨

- 천상옥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으나, 표결에 의해 부결
 - 수정 동의(안) 내용
 - 제5조제1항의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를 현행대로 1년으로 함
 - (안) 부칙의 단서규정 삭제
 - 표결 결과 : 재적위원 9인 중 찬성 2인, 반대 6인, 기권 1인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 數 意 見 的 要 旨 : 없 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2.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2001. 9. 4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8월 21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8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11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8. 31)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가.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2000. 10. 20)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하며 변상금의 청문제도 도입으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행 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사항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4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유재산의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의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자에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의 분납기간 및 분납이자율을 조정함(안 제21조)
 - 현행: 매각대금 5년이내, 이자 연 8% 분할납부
 - 개정: 매각대금 10년이내, 이자 연 5% 분할납부
- 공유지 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함(안 제24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 신설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대상 재산과 전세금의 산출방법 및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함(안 제24조의2)
-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
-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이나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기준
 -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한 때
 -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 기타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전세금의 산출방법
 - 전세금은 서울특별시중로구금고 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함
- 수납 및 반환절차
 - 전세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관리하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취소 또는 해지되어 중도해지자가 그때까지의 사용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산하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변상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지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다. 개정근거

- 지방재정법 제73조, 제74조, 제10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80조의2, 제84조, 제84조의2, 제92조, 제100조,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7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통보(서울시재산45500-1400. 2001. 6. 5)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가. 개정 이유

- 본조례 모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개정과 일부 규정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개 요 >

○ 본문 61개 조 중 17개 조문의 개정 및 신설

- 자구수정(11개조) :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3, 제25조, 제27조, 제38조
- 내용변경(3개조) : 제5조, 제6조, 제24조
- 내용신설(3개조) : 제4조, 제24조의2, 제27조의2

< 유형별 골자 >

유형별	대상조문	요 지
내용신설 (3개)	제4조	공공시설관리를 수탁받은 자가 다시 전대할 수 있게 하고, 전대로 징수근거 신설 (팔각정 경우:구→시설관리공단→전대)
	제24조의2	공유재산의 전세제도 도입(대상재산, 전세금액산출 등)
	제27조의2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제도 도입
내용변경 (3개)	제5조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삭제
	제6조	공유재산심의 대상 조정(용폐 심의대상 축소, 50%이상 공사 중 재산 추가)
	제24조	공유지 내 사유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세분화
자구수정 (11개)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행정재산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의3	공업배치법 제29조 → 공업배치법 제2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기존요율에 “이상” 부기
	제25조 제27조 제38조	조문의 정리

다. 근거법규

- 총 11개 법률 18개 조

< 조례 제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의2(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제77조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수익허가, 보전,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위탁재산의 전대제 도입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2(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 전대)

②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 변상금 부과지 사전통지제 >

○ 행정절차법 제21조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의 분류 >

○ 지방재정법 제78조

구 분		정 의	사 례
행정재산	공용재산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과 건설중인 재산	구·동청사
	공공용재산	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과 건설중인 재산	경로당, 어린이집 등
	기업용재산	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재산	시설공단 청사 등
보존재산		법령 또는 조례로 보존하기로 결정된 재산	문화재 등
잡종재산		위 재산 외 모든 재산	

< 공공시설의 개념 > - 법률학 사전

○ 지방자치법의 개념으로 공적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계획적 설비의 일체를 말하며, 행정주체 이외에 일반이 사용이 가능한 시설

라. 조문별 검토

조 문	개 정 요 지	검 토 사 항
제4조	공공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대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둠	령 제84조의2에서는 전대는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비나 사용료 징수근거는 없음(사인간의 계약관계로 규정 간주)
제5조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	2000.10.20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시에 같은령 제80조의2에 규정함으로써 중복됨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조정 - 용도폐지 심의대상 ┌ 종전 33㎡이상 └ 개정 330㎡이상 - 재산의 취득처분 대상재산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공사도 추가	용도폐지시 심의대상재산 330㎡ 기준은 시조례에서 정한 기준이므로 구기준에 타당한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음

조 문	개 정 요 지	검 토 사 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관리 및 처분대상재산에 행정재산으로 규정한 것을 →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 개정	타당함
제19조의2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	타당함
제21조	분할납부대상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제2호	타당함
제22조	공유토지의 대부료를 확정률로 지정하던 것을 변동률로 개정 -일반 공유재산 대부율 50/1000→50/1000 이상 -취락구조개선 대부율 25/1000→25/1000 이상 -주택재개발지구 내 대부율 15/1000→15/1000 이상	변동률로 개정되면 규칙으로 다시 부과율을 정하여야 함
제22조의3	감면대상규정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적용법규 변경
제24조	공유지내 사유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상업용은 종전대로 하고, 주거용은 공유지중 실점유면적만 산출	타당함
제24조의2	공공시설의 전세제도 도입 -대상재산: 경영수익구조물, 대규모 복합공공시설물 등 -대부필요성 검토:인근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전세처리가 더 유리할 때 -전세금 설정:1년이상 정기에금이자를 역산한 금액	타당함
제25조	대부료 등의 납기규정으로 종전규정은 ②항에서는 대부료 납기규정을 두고, ①항에서는 대부료를 선납하여야 한대로 규정하여 항간 충돌이 있던 사항을 ①항 선납규정을 삭제함	타당함
제27조	주택재개발지역내 공유토지의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하여 종전 년 10%이율 → 전액 감면할 수 있다	타당함
제27조의2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제 -사전통지 -이의신청처리	행정절차법 규정에 타당
제38조	1,000㎡이상의 공유토지 매각시 매각 → 분할매각으로 수정	타당함

바. 검토의견

○안 제6조제11항제4호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개정하면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심사대상을 종전 33㎡이상에서 330㎡이상으로 조정하였는 바 구 단위에서 용도폐지 면적 상향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사.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78조(공유재산의 종류) >

①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과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재산 : 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과 건설중인 재산

기업용재산 : 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재산과 건설중인 재산

보존재산 : 법령 또는 조례로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잡종재산 : 위 재산 외의 모든 재산

②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

< 지방재정법 제82조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용도·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09조의2 >

②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 >

①사용수익 허가대상이 되는 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위탁자는 위탁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2000.10.20)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3 >

다음 각호의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재산
2. 구획정리에 의한 채비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2조 >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존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 >

은닉된 공유재산은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3할에서 8할까지 매각대금을 공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공공시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개념 - 법률학사전

공적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계획적 설비의 일체를 말하며, 행정주체 이외에 일반이 사용이 가능한 시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중요재산의 의결대상) >

1건당 취득·처분의 경우 공시지가액 기준으로 1억이상 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면 위 승인으로 갈음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건축법 제49조제1항·서울시건축조례 제52조 >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분할면적

- 주거지역 90㎡이상
- 상업지역 150㎡이상
- 녹지지역 200㎡이상
- 기타지역 90㎡이상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공유재산의 처분) >

①산업단지 안에 있는 국·공유토지로서 산업단지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타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공유재산의 처분) >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정의) >

6. 아파트형 공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감면)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안 재 흥 위원장, 오 금 남 위원, 김 복 동 위원, 정 병 환 위원, 현 수 한 위원)

(답변자: 재무국장 동 연 호, 재무과장 조 수 완)

문) 공공시설을 수탁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시설물 모두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시설만 전대가 가능합니까?

답) 수탁받은 자가 제3자에게 시설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대를 불법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면서 수탁의 조건 범위 내에서 전대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문) 이 조례(안) 제6조제11항제4호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개정하면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심사대상을 종전 33㎡ 이상에서 33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답)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면 잡종재산화 되어 대부분 매각하는 데 또다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므로 별 무리는 없다고 보며 대부분의 서울시 산하 구에서 이러한 형태로 개정을 했거나,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 준칙(안)도 내려왔습니다

문) 이 조례(안) 제24조의2 공유재산의 전세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 대부제도로 한다면 연간 대부료만 받을 수 있으나, 전세제도를 도입하면 공공시설에 대한 부대시설이나 복합공공시설물에 대해 전세금을 받을 수 있기에 이자를 상회하는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 이 조례(안) 제27조의 주택재개발지역 내 공유토지의 대부료 연체이자 10%를 전액 감면하는 데 따른 세입감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감면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장받는 생계곤란자들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 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